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6일, 한병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병도의원)

현행법은 의료법인·재단법인·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가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격차가 2015년 0.31명에서 2021년 0.45명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족한 의료 접근성이 비수도권 인구 유출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중보건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관련 법인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의료법인·재단법인·지방의료원 및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여 의료기관 설립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의료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38조제1항)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세감면평가서¹⁾에 따르면,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는 2023년 8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133개, 병원 269개, 요양병원 561개, 정신병원 111개가 있고, 그 밖에 의원급 의료기관, 한방병원 등이 있음.

의료법인이 개설한 상급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 190개, 경남 143개, 부산 133개, 경북 118개, 전북 62개, 전남 61개, 충남 58개, 충북 56개, 서울 52개 등임.

의료법인은 1,000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이 전국적인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면서 환자의 치료와 지역 주민의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개정안을 통해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1) 출처: 대한병원협회 전국 병원명부 2023. 8. 기준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의료법인 등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8년까지 4년간 총 656억원(연평균 16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2)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38조제4항)

개정안은 재단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2023년 12월 29일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종교단체인 재단법인이었으나, 2023년 12월 29일 개정 이후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감면대상으로 확대됨.

개정안을 통해 재단법인이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 제38조제4항은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율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인 15%로, 종교단체인 재단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율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인 30%로 유지한 채 일몰기한만을 연장하고 있는데,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 종교단체인 재단법인 및 국립대학병원 등이 공통적으로 국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취득세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재단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8년까지 4년간 총 30.4억원(연평균 7.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3)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안 제38조의2제1호)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의료원은 13개의 시·도에 총 35개소가 있고, 이 중 종합병원은 30개, 병원 5개임. 지방의료원 35개소는 8~25개의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병상수는 9,914개이고, 응급 환자를 위한 병상수는 총 568개임.

지방의료원은 전국 각지에서 지역 주민들을 진료하고, 응급환자를 치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이 안정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9.6억원(연평균 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4) 국민건강 증진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안 제40조제1항)

개정안은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6조제1항²⁾에 따른 모자보건
사업으로 13개 시·도에 가족보건의원을 운영하며 건강검진, 예방접종,
일반진료(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를 실시하고,
의료취약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모성보호, 출산친화인식개선, 육아, 인구 연구 등을 수행함.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³⁾에 따라 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등 예방사업을 지원하며,
비전염성 만성질환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로
하는 질환의 조기 발견,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건강검진과 치료, 역학적
조사연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함.

대한결핵협회는 「결핵예방법」 제12조제1항⁴⁾에 따라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과 환자 발견, 군 검사, 환자 치료, 학술 연구 등 다
양한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며 국내외 호흡기 감염병 퇴치 업무를 담
당하고 있음. 대한결핵협회의 조직에는 본부 산하 결핵연구원, 글로벌협

2) 「모자보건법」 제16조(협회) ①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한국건강관리협회)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
충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등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4) 「결핵예방법」 제21조(대한결핵협회) ①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
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력원, 12개 지부, 9개 복십자의원 등으로 구성됨.

개정안을 통해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동 협회들이 모자보건사업, 건강검진, 호흡기 환자 치료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40억원(연평균 1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